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2. 24 선고 2020가단546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유병일, 하동규, 양선화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7. 11. 9.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0.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8,33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6751호 구상금 사건에서 C 등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0,216원과 그 중 6,689,362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모친인 망 D(‘망인’)은 2017. 11. 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소외 E, C가 있고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이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7. 11. 9.1)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피고(1분의 1)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2017.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 연대보증을 원인으로 하는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렵 C는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30,010,484원), 소외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소외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42,240,360원) 등을 부담하고 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을 6, 원주시의 사실조회 회신, H기관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장남으로서 장기간 망인을 봉양하고,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대여하여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사실상 전적으로 기여하여 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는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기인 2002. 11. 23. 무렵 피고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무렵 망인은 피고를 근저당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피고는 망인에게 위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된 사실이나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거나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는 사정, 이를 이유로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기여분을 산정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도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여한 것이고 이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망인에 대한 확정적 증여라거나 피고의 특별한 기여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망인이 C와도 상당 기간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정,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무렵 망인의 둘째 아들인 E도 관련 금융거래를 한 사정 등이 있어 피고의 주장과 달리 다른 아들들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유지나 망인의 부양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인정될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해 C의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고). 나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여러 명의 일반채권자가 존재하더라도 각 소송에서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 만약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중복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권리보호의 이익과 같은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3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6.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2017. 12. 2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3,000,000원인 사실²⁾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거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60,000,000원임을 전제로 배상할 가액을 주장하였다.

3)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93,000,000원에서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0,000,000원을 공제한 33,000,000원의 1/3인 11,000,000원이 그 한도가 될 것이고, 위 금액은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양수를 원인으로 하는 판결금 채권(6,820,362원과 이에 대한 1999. 8.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11,000,000원 전부가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2. 11. 2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11. 23.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부종성에 의하여 역시 소멸하였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와 망인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은 2017. 12. 20.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소멸되어 그 피담보채무액을 시가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다만 청구취지는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가액을 유지하였음),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무렵 망인에게 50,000,000원 정도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망인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여금의 변제기가 2002. 11. 23.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I가 원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가액의 회복을 마쳤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 I가 이 법원 2018가단3792호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I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체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화해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주식회사 I에게 가액의 회복을 마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가액배상의 범위인 1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동

[도로명주소] 강원도 원주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7층 호 84.6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강원도 원주시 대 1088㎡

2. 강원도 원주시 대 6939㎡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8027분의 48.39

- 이 상 -

1) 분할협의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에는 2017. 11. 9.,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2017. 12.로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2017. 12. 20.로 최종 주장하였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15조 등을 고려하여 이를 2017. 11. 9.로 본다.

2) 원고는 상속 개시시점인 2017.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인 115,000,000원을 기준으로 배상할 가액을 정할 것을 주장하나, 사실심 변론 종결시의 시가가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시가는 적용할 수 없다.